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75 발의연월일: 2025. 5. 22.

발 의 자:정춘생·차규근·김준형

황운하 · 김재원 · 김선민

이해민 · 신장식 · 강경숙

서왕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,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음.

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,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,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(안제25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

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지방의회의원(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)을"을 "지방의회의원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주민소환) ① 주민은 그	제25조(주민소환) ①
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<u>지방의</u>	지방의
회의원(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	회의원을
은 제외한다)을 소환할 권리를	
가진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